



EU REACH 도입배경 및 최근 국제동향

The introduction of REACH

원 창 덕 /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전문위원

REACH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의 기본 축이 되는 법령으로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이다.

신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핵심인 REACH 제도는 2003년 10월 EU집행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 간의 토론을 거친 수정안이 2006년 12월 18일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다.

2006년 11월~12월 2차 독회와 표결을 거쳐 REACH 최종법령은 2007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EU와 주요 국가의 산업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REACH 제도 도입 배경 및 최근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화학물질은 가정용 세정제에서 전자제품, 휴대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파악을 통해 관리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UN 등 국제기구를 중

심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

UN은 '06년 두바이에서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전략적 접근(SAICM)」을 채택하고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 세계 차원의 화학물질관리전략을 마련·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OECD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관리 및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화학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Responsible Care(RC)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유해화학



[표 3] 주요 비EU국 REACH 대응 추진동향

구분	주요 동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CH와 유사제도로서 일명 “어린이보호법(Child, Worker, and Consumer)” 제정 추진(’05, 환경청) ○ 산업계와 공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사업(HPV Challenge Program)” 추진(’98 ~)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ACH 유사제도로서 화학물질심사규제법 개정 검토(’06 ~, 환경성) ○ 산업계와 공동으로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사업(Japan HPV Challenge Program)” 운영(’05 ~) ○ 기업간 공동대응을 위하여 업종별(화학 및 완제품)로 기업이 참여하는 “완제품관리추진협의회” 운영
캐나다	○ REACH법과 캐나다제도를 비교·분석(’04 ~)하여 법률개정 검토 중
중국	○ 자체대응팀 구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06.10~), 홍보 등 실시
스위스	○ REACH 유사제도 마련 추진(’07년 하반기 방안마련 예정)

아울러 EU 회원국도 “REACH 대응지침(REACH법 124조, 집행위 지침)”에 따라 회원국별로 대응당국(CA: Competent Authority)을 지정하고 국가 도움센터(Helpdesk) 운영 공식적으로 영국(환경부), 벨기에(환경부), 독일(환경부 등), 아일랜드(복지부) 등에서 공식 helpdesk 운영 중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회원국간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비회원국들로 REACH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추진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국내 화학물질 관리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책 마련도 추진 중에 있다.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표 1] REACH제도 도입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추진일정	주요내용
2001.02	White Paper(백서) 발표
2003.10	REACH 법안(초안) 발표
2005.11~12	EU 의회의 1차 독회(법안취지 설명) 및 표결(이사회 통과) ※ 초안에 대해 수정안 마련하여 2차 독회를 추진기로 합의
2005.12	EU 집행위원회 Council Agreement(동의안) 발표
2006.06	EU 집행위원회 Council Agreement를 수정하여 Common Position 발표
2006.10	EU 의회의 환경위원회 표결
2006.11.30	EU 3개 입법기관이 최종안 합의 ※ REACH 법안 중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몇 가지 쟁점사항을 6차례의 비공식 협상을 거쳐 합의안 도출에 성공
2006.12.13	EU 의회의 2차 독회(수정안 심의) 및 표결
2006.12.18	EU 이사회 REACH 채택

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POPs 협약 : POPs 분류물질의 생산·사용·수출입 규제, EU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등 화학물질의 대한 국제적인 관리 강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EU에서도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역내(域內)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40여개 화학물질관리 법령을 전면 개편·단일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 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초 2001년 2월 White Paper(백서)를 발표한 이래 2003년 10월 초안을 발표하고 환경단체, 산업계 등의 논의를 마친 후 2006년 12월 18일 이사회 최종안 의결을 거쳐 2007년 6월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우선 REACH 시행을 뒷받침해줄 세부기술지침서(RIPs : REACH Implementation Project)를 마련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침서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일부 지침서는 논의가 진행 중 (총 23개 지침서 중 10개 완료, 13개는 현재 EU 관계전문가회의(SEG) 및 집행위작업반회의(CWG)를 통해 논의의 진행)으로 '08년 6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표 2] EU REACH 대응지침

- 화학물질 등록·관리 의무를 산업계에 부여하고, 정부 역할은 "산업계의 원활한 등록 지원"에 한정(REACH 124조 및 집행위 지침)
- 회원국별 "대응당국(Competent Authority)" 지정 의무화
 - 화학물질등록 주관부서를 대응당국으로 지정(회원국 대부분 환경부, 일부 복지부)
 - 대응당국(CA) 주요 기능: 정보파악·제공, 기업 지원(도움센터 운영) 등